

의안번호	2218769
의 퇴 인	임종득의원
회 답 일	2026.8.31.
추계번호	26D250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새마을연대”를 추가함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규정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청년새마을연대를 새마을운동조직에 추가(안 제2조)

- 개정안에 따라 청년새마을연대가 “새마을운동조직”으로 명시되는 경우, 현행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제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조(조세감면 등)¹⁾에 근거한 출연금·보조금 등의 지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1) **현행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해당 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따라 ‘청년새마을연대’가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원 여부, 지원 금액을 현 시점에서는 추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사용 내역은 없는 상황이며,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현황자료 부재로 감면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 참고로, 2026년도 예산 기준 새마을운동중앙회 외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은 없으며,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시·도새마을회, 지역 새마을문고 등의 일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

<참고> 청년새마을연대 조직 현황

연번	구분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시도청년새마을연합회		청년새마을연대	
		구 성	구성원	구 성	구성원
		18개	177명	204개	4,667명
1	서울	1개	10명	21개	442명
2	부산	1개	6명	16개	303명
3	대구	1개	23명	13개	305명
4	인천	1개	13명	9개	168명
5	광주	1개	5명	6개	205명
6	대전	1개	6명	5개	105명
7	울산	1개	9명	5개	191명
8	세종	1개	7명	1개	39명
9	경기	1개	9명	19개	281명
10	강원	1개	10명	12개	215명
11	충북	1개	10명	11개	252명
12	충남	1개	10명	15개	272명
13	전북	1개	8명	15개	339명
14	전남	1개	18명	19개	613명
15	경북	1개	7명	18개	488명
16	경남	1개	7명	16개	381명
17	제주	1개	13명	2개	47명
18	이북5도	1개	6명	1개	21명

주, 청년새마을연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연대단체로 2023년 6월 17일 설립

자료: 새마을운동중앙회

제5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참고> 새마을운동 관련 보조금 지급 현황(2026년도 예산 기준)

구분	대상	출연/보조	총지급액 (천원)	세부내용	각 세부내용별 금액(천원)
합계			63,409,978		63,409,978
국가	소계		7,631,000		7,631,000
	새마을운동중앙회	보조금	7,631,000	지역공동체실행	99,000
				지도자교육및홍보	421,000
				MZ세대 새마을운동	140,000
				연수원생활관리모델링	3,050,000
				새마을시범마을운영	3,309,000
				새마을지도자 양성	612,000
지방 자치 단체	소계		55,778,978		55,778,978
	새마을운동중앙회	보조금	500,000	연수원 시설개보수	500,000
	시도새마을회	보조금	6,139,369	사업비, 운영비 등	6,139,369
	시도 협의회	보조금	128,240	사업비, 운영비 등	128,240
	시도 부녀회	보조금	168,600	사업비, 운영비 등	168,600
	시도 직장·공장	보조금	12,030	사업비, 운영비 등	12,030
	시도 문고	보조금	574,510	사업비, 운영비 등	574,510
	시군구새마을회	보조금	46,587,727	사업비, 운영비 등	46,587,727
	시군구 협의회	보조금	192,000	사업비, 운영비 등	192,000
	시군구 부녀회	보조금	346,320	사업비, 운영비 등	346,320
	시군구 직장·공장	보조금	16,000	사업비, 운영비 등	16,000
	시군구 문고	보조금	1,114,182	사업비, 운영비 등	1,114,182

자료: 새마을운동중앙회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